원자력안전정보 비공개 세부기준

2022. 6. 7. 제정(시행 2022. 6. 9.) 2022. 6.29. 일부개정(시행 2022. 7. 1.)

- 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」(이하 '법'이라 한다) 제6조제3항, 동법 시행령(이하 '영'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(이하 '회사'라 한다)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기준은 회사에서 생산·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원자력안전정보에 한하여 적용한다.
- 제3조(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원자력안전정보"란「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생산·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말한다.
 - 2. "책임관"이란 원자력안전정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.
 - 3. "주관부서"란 원자력안전정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.
 - 4. "처리부서"란 원자력안전정보를 생산 및 보유하는 부서를 말한다.
 - 5. "보안부서"란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**제4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** ①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정보 비공개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 선하여 적용한다.
 - ② 원자력안전정보 비공개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.
- 제5조(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) 원자력안전정보는 「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, 회사 정보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6조(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)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정보 중 [별표1]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② 원자력안전정보 유형별 비공개 세부기준은 [별표2]를 따른다.
- 제7조(비공개 원칙 및 방법) ① 제6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기준에 직접 해당하는 정보만을 비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부분적으로 비공개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음영 처리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비공개 처리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제8조(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) ① 법 제9조, 영 제6조 관련 각 원자력본 부가 지역 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「원자력안전법」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(이하 이 조에서 "원자로및관계시설"이라 한다)의 안전에 관한 검사 결과
- 2. 원자로및관계시설 관련 사고나 고장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에 해당하는 사고나 고장의 발생 현황과 그 조치사항
- 3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6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반입되거나 저장되는 방사성폐기물의 현황
- 4. 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」 제37조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계획 및 그 훈련 결과
- 5.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원자력안전정보
- ② 각 원자력본부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.
- 제9조(정보공개 교육) ① 주관부서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비공개대상 원자력안전정보 세 부기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, 시청각교육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- 제10조(정보통신망 관리) 보안부서는 원자력안전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호의 요건에 따라 관리를 하여야 한다.
 - 1. 원자력안전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 장치의 설치·운영
 - 2.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접속기록의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
 - 3. 원자력안전정보를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
 - 4.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 · 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
 - 5. 그 밖에 회사 정보보안 관련 규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 요한 보호조치
- 제11조(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1.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
 - 2.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·부분공개 결정 또는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

- ② 그 밖에 정보공개심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.
- 제12조(이의제기) 정보공개와 관련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부 칙<2022. 6. 7.>

이 기준은 2022. 6. 9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2. 6. 29.>

이 기준은 2022. 7. 1.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세부분류(제6조제1항 관련)

1. 공통 세부 기준

- 가.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정보 (보안업무규정)
- 나. 법인, 기업, 단체,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(금융거래)에 관한 정보 및 원자력안전위원 회 소속 공무원·원자력안전정보 관계기관 소속 임직원 재산등록사항, 금융거래 자료(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4항)
- 다. 우편물의 검열·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,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 (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)
- 라.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(발명진흥법 제19조)
- 마.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정보 (통계법 제33조)
- 바. 지방세 및 국세 등 납세 관련 취득자료, 국세청 등에서 통보된 과세자료 (국세기본법 제81조의13)
- 사. 공판 개정전의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(형사소송법 제47조)

2. 국가안전보장・국방・통일・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(법 제6조제1항제1호)

- 가. 을지연습, 직장예비군·민방위대 편성표, 대 테러대비 전략, 국가 기반 체계 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,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
- 나.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된 인원, 시설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원자력안전정보
- 다. 국가안보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 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원자력안전정보
- 라. 국가 간의 회의 · 회담 · 협의 · 협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주요 원자력안전정보
- 마. 기타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원자력안 전정보
- 바. 정보통신망 구조도,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, 정보보호시스템 현황,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

3.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(법 제6조제1항제2호)

가. 위험물의 저장 위치, 위험물 제조소 설치 관련 사항, 통제·제한구역이 포함된 원자력안전정보

- 나. 방재, 방범 등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원자력안전정보
- 다.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방사성물질 등의 생산, 소지, 운반 및 관리체계에 관한 세부 정보
- 라.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 사항 등이 포함된 원자력안전정보
- 마. 방사성물질 등 보안대책,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및 방사선사고대응 민관협력체계 운영 관련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 및 공공안전에 관한 정보

4. 영업비밀로서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(법 제6조제1항제3호)

- 가. 공개 시 지적재산권 도용 또는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
- 나.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·신기술·내부관 리 등에 관한 정보
- 다.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(개인·법인·단체등)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
- 라. 제조·가공 공정, 건축·토목 등의 공사, 운송·통신, 기계·설비, 컴퓨터 등 기술 노하우 관련 정보
- 마. 각종 해외사업 추진 및 국제협력 단체·기구 활동시, 비밀준수협약 또는 기관 간의 정책에 의거하여 공개할 수 없는 정보

5. 성명・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(법 제6조제1항제4호)

- 가. 진정·탄원·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.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. 다만,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
- 나. 원자력 등 사업 수행 중 참여자의 집 주소·집 전화번호·학력·주민등록번호·사회경 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
- 다. 「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름
- 비고1.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다.
- 비고2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에 관한 원자력안전정보는 제외한다.
- 1)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정보

- 2)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원자력안전정보
- 3)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원자력안전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
- 4)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·직위
- 5)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·직업

[별표2]

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세부기준(제6조제2항 관련)

정보명	생산	보유	공개여부	비공개사유 항목(별표1)	비고
발전용원자로 건설허가 (원자력안전법 제10조)						
건설허가 신청서	0		부분공개	4. 영업비밀	가	
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	0		부분공개	4. 영업비밀	가	
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	0		부분공개	4. 영업비밀	가	
바고이이기그 미 코레기서이 웨웨레하다			ㅂㅂㄱᆌ	2. 국가안전	나	
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			부분공개	4. 영업비밀	가	
변기고사비고 네	0		보 보 고 제	4. 영업비밀	가	
부지조사보고서			부분공개	3. 국민안전	라	
원자로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	0		부분공개	4. 영업비밀	가	
원자로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	0		부분공개	4. 영업비밀	가	
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	0		부분공개	4. 영업비밀	가	
건설변경허가 신청서	0		부분공개	4. 영업비밀	가	
건설변경허가 심사 보완자료요구서		0				타기관 정보
건설변경허가 심사 보완요구사항 답변서	0		비공개	4. 영업비밀	가	
경미한사항 변경신고서	0		비공개	4. 영업비밀	가	
경미한사항 변경신고 심사 보완자료요구서		0				타기관 정보
경미한사항 변경신고 심사 보완요구사항 답변서	0		비공개	4. 영업비밀	가	
건설허가 심사 보완자료요구서		0				타기관 정보
표준설계인가 신청 (원자력안전법 제12조)						
인가신청서	0		부분공개	4. 영업비밀	가	
표준설계기술서	0		부분공개	4. 영업비밀	가	
원자로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	0		부분공개	4. 영업비밀	가	
원자로의 설계에 관한 기술능력 설명서	0		부분공개	4. 영업비밀	가	
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	0		부분공개	4. 영업비밀	가	
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	0		부분공개	4. 영업비밀	가	
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서	0		부분공개	4. 영업비밀	가	
표준설계인가 심사 보완자료요구서		0				타기관 정보
표준설계인가 심사 보완요구사항 답변서	0		비공개	4. 영업비밀	가	
계량관리규정 (원자력안전법 제15조)						

정보명	생산	보유	공개여부	비공개사유 항목	(별표1)	비고
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승인 신청서	0		부분공개	5. 개인정보	다	
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변경승인 신청서	0		부분공개	5. 개인정보	다	
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서	0		부분공개	5. 개인정보	다	
안전관련설비 부적합사항 보고 (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)						
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 보고			부분공개	4. 영업비밀	라	
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 (원자력안전법 제16조)	<u> </u>			'		
사용 전 검사계획서		0				타기관 정보
사용 전 검사보고서		0				타기관 정보
운영허가 (원자력안전법 제20조)	·					
바저 9.의기근 미 관계시서에 관하 으여기수기치시	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○ ○ ○		비공개	2. 국가안전	나	
일천중천자로 옷 천계자일에 천원 단경기결자점지			H10/11	4. 영업비밀	가	
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			부분공개	2. 국가안전	나	
				4. 영업비밀	가	
사고관리계획서	0		부분공개	2. 국가안전	나	
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	0		부분공개	4. 영업비밀	나	
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			부분공개	2. 국가안전	나	
				4. 영업비밀	가	
액체 및 기체상태의 방사성물질 등의 배출계획서			부분공개	1. 공통	가	
운영변경허가 신청서			비공개	2. 국가안전	나	
				4. 영업비밀	가	
운영변경허가 심사 보완자료요구서		0		0 7-101-1	. 1	타기관 정보
운영변경허가 심사 보완요구사항 답변서			비공개	2. 국가안전	나	_
				4. 영업비밀	가	
경미한사항 변경신고서			비공개	2. 국가안전 4. 영업비밀	나 가	_
경미한사항 변경신고 심사 보완자료요구서		0		4. 경엽미달	/ F	타기관 정보
경의한사성 현경선고 검사 도전자료표기시		0		2. 국가안전	나	나기선 경보
경미한사항 변경신고 심사 보완요구사항 답변서	0		비공개	4. 영업비밀	가	_
스트레스테스트 안전개선사항 관련 기술검토 사항 심사 보완요구사항 답변서			비공개	2. 국가안전	나	
후쿠시마후속조치 관련 기술검토 사항 심사 보완요구사항 답변서			비공개	4. 영업비밀	가	
대형지진안전개선대책 관련 기술검토 사항 심사 보완요구사항 답변서	0		비공개	4. 영업비밀	가	
검사 (원자력안전법 제22조)			1 0 / 11	7. 0 1 1 2		
정비 및 시험계획서			비공개	4. 영업비밀	가	
정기검사신청서	0		비공개	4. 영업비밀	가	

정보명	생산	보유	공개여부	비공개사유 항목(별표1)	비고		
주기적 안전성평가 (원자력안전법 제23조)								
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			비공개	2. 국가안전	다			
구기역한선경청기 로프시			11 5 / II	4. 영업비밀	다			
주기적안전성평가 보완자료 요구서		0				타기관 정보		
 주기적안전성평가 심사 보완요구사항 답변서			비공개	2. 국가안전	다			
			0 > 11	4. 영업비밀	다			
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(원자력안전법 제26조)	ı							
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	0		부분공개	5. 개인정보	다			
원자로시설의 가동 중 점검 및 시험에 관한 조치	0		비공개	4. 영업비밀	가			
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	0		부분공개	5. 개인정보	다			
원자로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	0		비공개	4. 영업비밀	라			
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(원자력안전법 제28조)								
해체계획서			부분공개	2. 국가안전	나			
				4. 영업비밀	가			
의견 청취 결과 또는 공청회 개최결과	0		부분공개	5. 개인정보	나			
 해체승인신청서			부분공개	2. 국가안전	나			
				4. 영업비밀	가			
핵연료물질 사용 또는 소지,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 (원자력안전법 제47조)								
시설검사 관련 서류		0				타기관 정보		
정기검사 관련 서류		0				타기관 정보		
핵연료물질 사용 또는 소지 기록과 비치 (원자력안전법 제49조)								
핵연료물질의 기록	0		비공개	2. 국가안전	라			
감속재물질의 기록	0		비공개	2. 국가안전	라			
방사선안전관리의 기록	0		부분공개	5. 개인정보	다			
방사성동위원소,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(원자력안전법 제53조)								
허가신청서			부분공개	4. 영업비밀	라			
역가전경시 			十七万개	5. 개인정보	다			
안전성분석보고서	0		부분공개	4. 영업비밀	라			
품질보증계획서	0		부분공개	4. 영업비밀	라			
방사선안전보고서	0		부분공개	5. 개인정보	다			
안전관리규정	0		부분공개	4. 영업비밀	라			
장비의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	0		부분공개	5. 개인정보	다			
인력의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	0		부분공개	5. 개인정보	다			
방사선안전관리자 (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)								

정보명	생산	보유	공개여부	비공개사유 항목((별표1)	비고			
방사선관리자 선임 및 해임 신고서	0		부분공개	5. 개인정보	다				
대리자지정서	0		부분공개	5. 개인정보	다				
방사성동위원소 및 발생장치 검사 (원자력안전법 제56조)	·								
시설검사 관련 서류(신청서 등)	0		부분공개	5. 개인정보	다				
정기검사 관련 서류(신청서 등)	0		부분공개	5. 개인정보	다				
운반신고 (원자력안전법 제71조)									
				5. 개인정보	다				
방사성물질 등 운반신고서			부분공개	2. 국가안전	마				
영사/정물설 등 군단선고시			十七万川	3. 국민안전	나				
				3. 국민안전	라				
방사성물질 운반명세서		нн	មមភភា	5. 개인정보	다				
방사성물실 순반병세시 			부분공개	4. 영업비밀	나				
				2. 국가안전	마				
운반할 방사성물질 등에 관한 설명서			부분공개	3. 국민안전	나				
				3. 국민안전	라				
교기 미 (이 기기기르H			ннээл	5. 개인정보	다				
포장 및 운반 점검기록부			부분공개	4. 영업비밀	나				
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 및 특수형 방사성물질의 설계 승인서		0				타기관 정보			
운반절차서	0		부분공개	4. 영업비밀	나				
비상대응계획서	0		부분공개	4. 영업비밀	나				
변경신고서						부분공개	5. 개인정보	다	
[현생·현고기			十七岁川	2. 국가안전	마				
사고의 조치 (원자력안전법 제74조)									
				5. 개인정보	다				
비상대응계획			부분공개	2. 국가안전	마				
미경대중계획			十七万川	3. 국민안전	나				
				3. 국민안전	라				
				5. 개인정보	다				
비상대응 조직과 그 권한과 의무			ннэл	2. 국가안전	마				
미경대등 조직과 그 현안과 의구	0		부분공개	3. 국민안전	나				
				3. 국민안전	라				
				5. 개인정보	다				
사고보고절차			부분공개	2. 국가안전	마				
				3. 국민안전	나				

정보명	생산	보유	공개여부	비공개사유 항목(별표1)	비고
				3. 국민안전	라	
				5. 개인정보	다	
			11 11 7 N	2. 국가안전	마	
사고유형에 따른 조치계획	0		부분공개	3. 국민안전	나	
				3. 국민안전	라	
포장 및 운반 검사 (원자력안전법 제75조)				·		
				2. 국가안전	마	
검사신청서	0		부분공개	3. 국민안전	나	
				3. 국민안전	라	
자체점검결과	0		부분공개	4. 영업비밀	나	
판독업무자의 등록 (원자력안전법 제78조)	<u>'</u>					
판독업무자 등록 신청서	0		부분공개	5. 개인정보	다	
판독업무자 등록 변경 신고서	0		부분공개	5. 개인정보	다	
판독업무 등록 심사보고서		0				타기관 정보
판독업무 등록 변경 신고 심사보고서		0				타기관 정보
판독업무자의 검사 (원자력안전법 제80조)						
판독검사 검사신청서	0		부분공개	5. 개인정보	다	
판독검사 검사계획서		0				타기관 정보
판독검사 검사보고서						타기관 정보
판독검사 성능검사 성적서						타기관 정보
판독시설 및 판독업무 기록과 비치 (원자력안전법 제82조)						
판독시설 및 판독업무에 관한 사항 기록	0		부분공개	5. 개인정보	다	
방사선장해방지조치 (원자력안전법 제91조)						
측정결과에 관하여 기록 작성, 보존, 존치	0		부분공개	5. 개인정보	다	
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건강진단	0		부분공개	5. 개인정보	다	
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	0		부분공개	5. 개인정보	다	
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(원자력안전법 제92조)						
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 발생 보고	0		비공개	4. 영업비밀	가	
방사선장해 발생보고	0		부분공개	5. 개인정보	다	
원자력이용시설 사건 초기 서면보고서	0		부분공개	4. 영업비밀	가	
원자력이용시설 사건 상세보고서	0		부분공개	4. 영업비밀	가	
보고대상사건의 경향 및 분석	0		비공개	4. 영업비밀	가	
방사선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,양수 제한 (원자력안전법 제94조)						

정보명	생산	보유	공개여부	비공개사유 항목((별표1)	비고	
방사성동위원소의 누설점검기록 사본	0		부분공개	5. 개인정보	다		
도난 등의 신고 (원자력안전법 제97조)							
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 등 도난 등 사실 신고	0		부분공개	5. 개인정보	다		
보고, 검사 등 (원자력안전법 제98조)							
원자로 운영자의 방사선 관리에 관한 사항	0		부분공개	5. 개인정보	다		
핵연료물질의 재고량에 관한 보고서	0		비공개	2. 국가안전	라		
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성발생장치의 생산, 취득, 사용, 판매 및 처분현황 등	0		부분공개	5. 개인정보	다		
개인선량계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	0		부분공개	5. 개인정보	다		
직독식 개인선량계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	0		부분공개	5. 개인정보	다		
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	0	0	비공개	5. 개인정보	다	타관생포함	
선량계의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선량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판독특이자 현황	0		부분공개	5. 개인정보	다		
방사선안전관리자 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직장교육결과	0		부분공개	5. 개인정보	다		
국내에서 운반되는 운반물 현황				비공개	2. 국가안전	라	
국내에서 한인과는 한인을 인정		미당개	5. 개인정보	다			
국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운반물 현황			비공개	2. 국가안전	라		
			-10/11	5. 개인정보	다		
국내에서 국외로 반출되는 운반물 현황			비공개	2. 국가안전	라		
국내에서 국서도 전실되는 단단을 현생 			H19/11	5. 개인정보	다		
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(원자력안전법 제100조)							
특정기술주제보고서 승인신청서	0		비공개	4. 영업비밀	라		
특정기술주제보고서 심사보완요구사항 답변서	0		비공개	5. 영업비밀	라		
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(원자력안전법 제105조)							
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 결과·평가에 관한 정보		0				타기관 정보	
손해배상조치 (원자력손해배상법 제5조)							
원자력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	0	0	부분공개	5. 개인정보	다	타관생화	

- ※ 공개 여부는 회사가 생산한 문서에 한해서만 판단
- 보유문서는 문서를 생산한 기관의 판단을 따름 (정보공개법 시행령 제9조)
- ※ 상기 세부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원자력안정정보는 별표1을 고려하여 비공개 수준을 판단
- ※ 비공개 및 부분공개의 경우,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마스킹 처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원자력안전정보 비공개 처리 사유서를 작성한 후 공개

원자력안전정보 비공개 처리 사유서

[정보명 : ㅇㅇㅇㅇ]

	위치	비공개 사유 (원자력안전정보 비공개 세부사유)			
순번	(쪽, 줄, 목차 등)	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	비공개 세부사유	담당 기관 (부서)	